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21가단11427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시호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6. 23.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13.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2016. 9. 19. 접수 제156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사 고종영

[별지]

부동산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전라남도 담양군 D 대 331 평방미터
2. 전라남도 담양군 E 대 301 평방미터
3. 전라남도 담양군 F 대 208 평방미터
4. 전라남도 담양군 G 대 4188.3 평방미터
5. 전라남도 담양군 H 대 347 평방미터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채권자이고 소외 C은 채권자로부터 2015. 8. 17. 금 4,000만원을 빌려간 사람이며, 피고는 C의 부인입니다.

2. 원고의 피보전채권

원고는 2015. 8. 17. 소외 C에게 금 4,000만원, 이자는 연 24%, 변제기한은 2016. 1. 17.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 C은 변제기한을 지키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금원을 제대로 반환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공정증서, 갑 제2호증 영수증 각 참조).

실제로 소외 C은 현재까지 채권자에게 갑 제3호증과 같이 2015. 9. 18.부터 2017. 6. 20.까지 총 1,720만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에는 이자마저 지급하고 있지 아니합니다(갑 제3호증 본인금융거래 참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보전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3. 이 사건 사해행위의 존재

소의 C은 별다른 책임재산이 없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들이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의 C은 원고의 피보전채권 성립 이후인 2016. 9. 13.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들을 자신의 아내인 피고에게 모두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갑 제5호증 동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원고는 소의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증여행위를 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판례에 따르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808 판결 등 참조)]고 하고 있으므로 소의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는 사실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합니다.

4. 피고의 악의 추정

소의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을 모두 증여한 것은 명백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사해행위 채무자인 소외 C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는 소외 C의 아내이므로 피고가 자신의 선의를 항변하려면 상당히 객관적인 입증이 요구될 것입니다.

5. 결 론

원고 소송대리인은 귀원께서 위와 같은 사정을 두루 살피시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